

대전지방법원 2022. 5. 11 선고 2021가단1186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B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2. 4. 27.

판 결 선 고 2022. 5. 11.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1. 4. 22.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2021. 4. 22. 접수 D로 마친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11419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C임)는 원고에게 90,000,000원을 2016. 7.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2016. 6. 2. 확정되었다.

나. 원고가 2019. 6.경 위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C의 거주지 내 동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E로 유체동산압류를 신청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배우자로서 우선매수신고를 하여 매각대금 2,600,000원을 지급하고 위 동산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2019. 6. 20. 그 중 1,037,600원을 배당금으로 수령하였다.

다. C는 2021. 4. 21.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매대금 46,900,000원에 (주)F로부터 취득한 후 같은 달 22. 배우자인 피고와 사이에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라. C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자동차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금융기관에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가 채무 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C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① 이 사건 자동차의 가액보다 이 사건 자동차로 인해 G 주식회사에 대해 부담하는 할부금이 더 많아 이 사건 자동차가 실제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② 원고와 C 사이에 채권채무가 있는지 모르는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피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1. 4. 13. 이 사건 자동차를 (주)F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G(주)로부터 57,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21. 4. 21. 이 사건 자동차에 채권액을 28,500,000원, 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를 C로 하여 G(주)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인정되나, 다른 한편 위에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대금이 46,9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자동차의 가액이 저당권 설정금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가액에서 위 저당 채권액을 뺀 나머지 금액은 C의 일반 채권자들의 책임재산으로 제공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C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에 기해 C의 유체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당시 피고가 배우자로서 우선매수신고를 하여 유체동산은 매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적어도 위와 같이 유체동산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된 2019. 6.경에는 C가 원고에 대해 채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보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고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할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강길연

별지